

## Q 2. 일본의 가업승계제도에 대하여

A.

법인판 가업승계제도 (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 · 상속세의 납세유예 · 면제 )

가업승계제도는 2008년 신설되었으며(일반조치), 그 후 개정을 여러 번 하였으나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써 당시 종업원의 수에서 8 할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유예가 중단 되는 등, 이 제도를 이용하여도 상속 · 증여를 받은 주식 등의 평가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세 ·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과세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개정 시 도입된 사업승계제도는 10년간의 특별조치로써 신설되었으나, 일반조치에 비하여 특례조치의 쪽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10년간은 누구나 특례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특단의 세제상의 수단이 없는 한 일반조치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승계제도의 특례조치를 받기 위하여는, 회사의 후계자나 승계시점까지의 경영전망 등을 기재한 「특례승계계획」을 만들어 인정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상공회, 상공회의소, 세리사, 변호사, 금융기관 등)의 소견을 기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리사의 주된 고문거래처는 중소기업 · 소규모 기업이며 경영자의 7 할은 고문세리사 등을 경영문제의 상담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세리사는 그 특징에서도 고문기업이 사업승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최적의 존재인 것이며, 경영자에 대하여 사업승계를 깨닫게 하고 고문거래처 기업의 경영의 투명한 가시화 · 기업의 매력을 보이게 하는 것 등을 지도하는 등 주도적인 입장에서 원활한 사업승계를 해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례조치와 일반조치의 비교

	특례조치	일반조치
사전계획책정 등	5년 이내 특례승계계획 제출 ( 2018년4월1일부터 2023년3월31일까지 )	필요 없음
적용기한	10년 이내 증여 · 상속 등 ( 2018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	없음
대상주식수	주식 전부	총 주식수의 최대2/3까지
납세유예비율	100%	증여 : 100%      상속 : 80%

승계모형	복수주주로부터 최대 3명 후계자	복수의 주주로부터 1명의 후계자
고용확보요건	탄력화 (35페이지, 45페이지)	승계 후 5년간 평균 8할의 고용유지 필요
사업 계속이 곤란한 사유발생 한 경우 면제	있음 (49페이지)	없음
상속 시 정산과세적용	60세 이상인 자가 20세 이상인 자에게 증여	60세이상자로부터 20세이상의 추정 상속인(직계비속) · 손자에게 증여

※특례조치 적용을 전제로 기재하며, 일반조치와 특례조치로서 다른 부분은 별도의 내용을 기재한다.

## 1.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및 면제

### 유예 및 면제절차 등

(1) 특례승계계획의 책정·제출·확인 (특례조치)	<p>회사의 후계자나 승계시점까지 경영전망 등을 기재한 「특례승계계획」을 책정하여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세리사,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의 소견을 기재한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b>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특례승계계획의 책정 등은 필요 없다.</b></p>
(2) 증여	<p>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선대 경영자 등인 증여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정 수 이상의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를 받아야 한다.</p>
(3)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p>회사의 요건, 후계자(수증자)의 요건, 선대 경영자 등의(증여자)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도부현 지사에게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또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뜻을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p> <p>◆이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p> <p>1 회사의 주된 요건</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장회사</li> <li>(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li> <li>(3) 풍속영업회사</li> <li>(4) 자산관리회사(유가증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현금·예금 등의 특정자산의 보유비율이</li> </ul>

총자산의 70% 이상인 회사(자산보유형 회사)나 이를 특정자산으로부터 운용수입이 총수입금액의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를 말한다.) 단,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는 제외.

## 2 후계자인 수증자의 주된 요건

증여시점에서

- (1)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2) 20세 이상일 것
- (3) 임원 취임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4) 후계자 및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총 의결권수의 50%초과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 (5) 후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수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할 것(특별조치)

가 후계자가 1명인 경우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후계자가 2명 또는 3명의 경우

총 의결권수의 10%이상의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건이 됨

## 3 선대 경영자 등인 증여자의 주된 요건

- (1)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2) 증여 직전에 증여자 및 증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총의결권수의 50%초과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후계자를 제외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 (3) 증여시점에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4 담보제공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주 수 요건(특별조치)>

	<p>후계자는 다음의 1 또는 2의 구분에 상응하는 일정 수 이상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해야 한다.</p> <p>1 후계자가 1명인 경우      다음의 (1) 또는 (2)의 구분에 상응하는 주식수      (1) <math>a \geq b \times 2 / 3 - c</math> 의 경우 . . . 「<math>b \times 2 / 3 - c</math>」 이상의 주식 수      (2) <math>a &lt; b \times 2 / 3 - c</math> 의 경우 . . . 「<math>a</math>」의 주식 전부</p> <p>2 후계자가 2명 또는 3명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수</p> <p>(1) <math>d \geq b \times 1 / 10</math>      (2) <math>d &gt;</math> 증여 후에 선대경영자 등이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a : 증여 직전에 선대경영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수      b : 증여 직전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총수      c : 후계자가 증여직전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총수      d : 증여 후에 후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수</p> </div>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가 1명의 경우와 같은 방식의 주식수만큼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게다가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수는 앞 페이지 &lt;비상장주식등의 취득주수 요건 (특례조치)&gt;의 항목 1(1)의 경우는 「<math>b \times 2 / 3 - c</math>」의 수가, 동 항목 1(2)의 경우는 「<math>a</math>」의 수가, 각각 한도로 된다</p>
(4)증여세 신고기한	증여 받은 연도의 다음해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5)납세유예기간 중	납세유예를 계속 적용 받기 위하여는 신고 후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등을 계속 보유 해야 한다 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등 일정의 경우(확정신고)에는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자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면제대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세액이 일정부분 면제된다).
	「면제대상증여」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이 후계자에게 증여되어, 그 후계자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및 면제」  
(31페이지 이하의 설명)의 적용을 받은 경우의 증여를  
말한다.

- ◆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주된 경우
- (1) 아래표의 「A」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증여  
세액 전액과 이자세를 함께 납부한다.  
이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은 종료 한다.
- (2) 아래표의 「B」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증여  
세액 중에서, 양도 등을 한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와  
이자세를 함께 납부한다.

(주) 양도 등을 한 부분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는 납세유예가 계속 된다.

납세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할 주된 경우	(특례) 경영 증여승계기간 이내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일부를 양도 등 (「면제대상증여 」를 제외.) 을 한 경우	A	B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A (※ 1)	C (※ 2)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만족 시 제외)	A	A
일정한 기준일에 고용평균 「증여 시 고용8할」 을 하회 한 경우	C (※ 2, 3 ) 일반조치는 A	C (※ 2)

※ 1 어쩔 수 없는 이유 (47페이지참조) 가 있는 경우  
제외

- 2 「C」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가 계속 된다
- 3 원활화법 시행령에서 하회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인정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토로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p>그리고 그 보고서 및 확인서 사본은 계속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p> <p>4 고용평균은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의 말일에 판정한다.</p> <p>「(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이란, 이 제도의 적용에 관련된 증여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다음의 ①, ② 중 빠른날과 후계자(수증자) 혹은 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일 잔일 중 빠른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① 후계자(수증자)가 최초로 이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다음날 이후 5년이 경과한 날</p> <p>② 후계자(수증자)가 최초로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 다음날 이후 5년이 경과한 날</p> <p>계속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계속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p> <p>그리고 「계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 받은 증여세의 전액과 이자세를 납부해야 한다.</p>
(6) 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 등	<p>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신고서」 · 「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망 등이 있은 때에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가 면제 된다.</p> <p>◆ 유예 받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p> <p>(1) 선대경영자 등(증여자)가 사망한 경우</p> <p>(2) 후계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p> <p>(3)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이내에 여전히 수 없이 회사의 대표권을 갖지 않게 된 날 이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4)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5)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p> <p>(6)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에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양도 · 해산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p>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일정한 사유란, ①과거 3년간 중 2년 이상 적자 등의 경우 ②과거 3년중</p> </div>

	<p>2년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③ 이자부담채무(매출의 6개월분의 경우)          ④ 유사업종의 상장기업의 주가가 전년도          주가를 하회한 경우          ⑤ 심신장애로 후계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양도·합병 만) 를 말한다.</p> <p><b>일반조치에 대하여는, (6)은 적용하지 아니한다.</b></p>
	<p>&lt;납세유예 받을 증여세 등의 계산방법&gt;</p> <p><u>스텝 1.</u> 증여 받은 전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u>스텝 2.</u>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주식 만 증여 받았          다고 가정하여 증여세를 계산 한다.  <u>스텝 3.</u> 스텝2의 금액이 「납세유예 받을 증여세」 가          된다.          그리고, 스텝1의 금액에서 스텝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 납부세액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p>

## 2.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

### 유예 및 면제절차 등

(1)특례승계계획의 책정·제출·확인 (특례조치)	회사의 후계자나 승계시점까지 경영전망 등을 기재한 「특례승계계획」을 책정하여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세리사,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의 소견을 기재한 후 2023년3월31일까지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상속개시	상속개시 후에, 회사의 요건, 후계자(상속인 등)의 요건, 선대경영자 등(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토도부현 지사에게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후 8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상속세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납세유예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1 회사의 주된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상장회사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3) 풍속영업회사

(4) 자산관리회사(유가증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현금·예금 등의 특정자산의 보유비율이

총자산의 70% 이상인 회사(자산보유형 회사)나 이들

특정자산으로부터 운용수입이 총수입금액의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를 말한다.) 단,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는 제외

2 후계자인 상속인 등의 주된 요건

(1) 상속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상속개시시점에 후계자 및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의결권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을 것

(3) 상속개시시점에 후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주식 수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할 것(특별조치)  
가 후계자가 1명인 경우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 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후계자가 2명 또는 3명의 경우

총 의결권수의 10%이상의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 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건이 됨

(4) 상속개시 직전 회사의 임원일 것(피상속인이 6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한다)

3 선대경영자 등인 피상속인의 주된 요건

(1)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상속개시직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총의결권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후계자를 제외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p>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p> <p>4. 담보제공 납세유예 된 상속세 및 이자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4) 상속세 신고기한	<p>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lt;납세유예 상속세 등의 계산방법(특례조치)&gt;</p> <p><u>스텝 1.</u> 과세가액의 합계액을 근거로 계산한 총상속세액 중, 후계자의 과세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를 계산 한다.</p> <p><u>스텝 2.</u> 후계자가 비상장주식 등 특례조치 적용대상재산 만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세액 중에서, 특례조치 적용을 받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에 대응하는 후계자의 상속세액을 계산 한다.(채무나 장례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이외의 재산에서 먼저 공제 한다). 스텝 2의 금액이 「납세유예 상속세액」이 된다. 그리고 스텝1의 금액에서 납세유예 상속세(스텝2 금액)를 공제한 금액(납부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p>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가 취득한 재산이 일반조치 적용을 받을 비상장주식 등의 20%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상속세총액 중에서, 그 부분에 대응하는 후계자의 상속세액을, 스텝2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유예세액」이 되며, 스텝1의 금액에서 그 유예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수는 발행한 주식 총수의 최대 2/3 가 된다.</p>
(5) 납세유예 기간 중	<p>신고 후에도 계속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납세유예가 계속 적용 된다.</p> <p>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등 일정한 사유발생(확정사유)시,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자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면제대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납세유예세액이 면제 된다.)</p> <p>◆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된 경우</p>

- (1) 아래표의 「A」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상속 세액 전액과 이자세를 합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은 종료한다.
- (2) 아래표의 「B」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상속 세액 중 양도한 부분에 대응하는 상속세와 이자세를 합하여 납부한다.  
 (주) 양도한 부분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계속 납세가 유예 된다.

납세유예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내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일부를 양도(「면 제대상 증여」를 제외)한 경우	A	B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A (※ 1)	C (※ 2)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에 해당한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외)	A	A
일정한 기준일에 고용평균이 「증여 당시의 고용의 8할」을 하회한 경우	C (※ 2, 3)  일반조치는 A	C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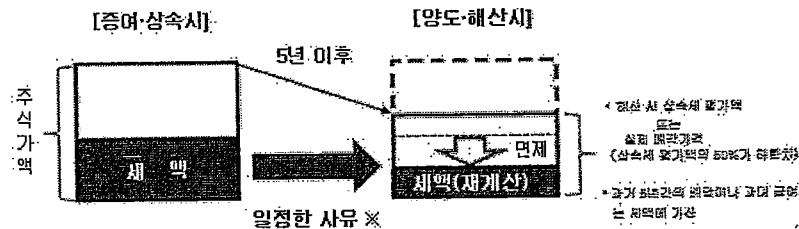
\*1 어쩔 수 없는 이유(하단 참조)가 있는 경우 제외  
 2 「C」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납세유예 된다  
 3 원활화 시행령에서 밀돈 이유 등을 기재한 인정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 및 확인서사본은 계속 신고서에 첨부한다.  
 4 고용평균은, (특례) 경영승계기간의 말일에 판정 한다.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다음에 게기하는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p>정신장애자 보건복지대장(장애 등급 1급인 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한 한다)을 교부 받을 것</p> <p>②신체장애자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신체장애자 대장(신체상 장애의 정도가 1급 또는 2급인 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한 한다)을 교부 받을 것</p> <p>③개호보협법의 규정에 의거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개호필요5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한다)받을 것</p> <p>④위 ①부터 ③까지 기기한 사유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p> <p>계속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계속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한다</p> <p>그리고, 「계속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과 이자세를 합하여 납부해야 한다.</p>
(6) 후계자의 사망 등	<p>후계자가 사망 등을 한 경우 「면제신고서」 · 「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 등이 있은 때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세가 면제 된다.</p> <p>◆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 납부가 면제 되는 주된 경우</p> <p>(1) 후계자가 사망한 경우</p> <p>(2)(특례) 경영승계 기간 이내에 어쩔 수 없는 사유(앞 페이지 중간 참조)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3)(특례) 경영승계 기간 경과 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4)(특례) 경영승계 기간 경과 후에 회사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p> <p>(5) 특례경영 승계기간 경과 후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 회사가 양도 · 해산한 경우</p>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5)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p>

### 【정고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의 납세 유예액 면제에 대한 특례 조치】

특례: 경영(증여)승계 기간 경과 후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1에 특례 조치의 적용에 관련된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 등을 한 경우는 그 대가의 금액(양도 등을 했을 때 상속세 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치가 됩니다.※2)를 기초로 해서 상속(증여)세액 등을 재계산한 세액과 차액 배당 등의 금액과의 합계액이 당초의 납세 유예 세액을 밀들 경우 그 차액은 면제됩니다(재계산한 세액은 납부).



- ※1 ① 과거 3년간 중 2년 이상 적자 등의 경우 ② 과거 3년간 중 2년 미만 감소 등의 경우 ③ 유미자 부채 총 매출의 6배 월어치의 경우 ④ 유사업종의 상장 기업의 주가가 전년의 주가를 밀들 경우, ⑤ 심신의 장애등에 따라 후계자에 의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양도·합병에 한정함)
- ※2 양도에서 2년 후에도, 양도 등을 했을 때 고용의 절반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제의 대가금액에 근거한 세액과의 차액은 그 시점에서 면제됩니다.

### 3. 선대경영자 등(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취급

(1) 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	<p>「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31페이지 참조)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다른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p> <p>그리고, 그 사이 토도부현 지사의 「원활화법의 확인」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등의(특례)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p>◆ 「비상장주식 등의(특례)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p> <p>「증소기업에서의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사가 이 제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토도부현 지사에게 「원활화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비상장주식 등의(특례)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상속세 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 및 이자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3)상속세 신고기한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 등의 계산 방법 45페이지 참조
-------------	-----------------------------------